

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936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1. 10. 15.
4. 회부일자 : 2021. 11. 1.

II. 제안이유
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나, 사전기획용역,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, 당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,
-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교육환경개선 기금 예치금 3,184억원 중 2022년도에 냉난방개선과 석면해소 사업 시설비 2,317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의 규정에 따라 「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1. 기금 설치개요

- 설치년도 : 2021년
- 주요내용

(단위: 천원)

| 기금 재원별 | '21년도 말 조성액(a) | '22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'22년도 말 조성액 (d=a+b-c)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수입계획(b) | 지출계획(c) | | |
| 합 계 | 318,411,000 | 260,456,241 | 231,702,000 | 347,165,241 | |
|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| 318,411,000 | 258,100,000 | 231,702,000 | 344,809,000 | |
|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| -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 |

IV. 참고사항

1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4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계획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6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기금총괄

- 동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‘기금’)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교육시설법’)¹⁾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, 유지보수 및 확충,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,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 제8조²⁾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동 기금의 법적

1) 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2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,

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,581억원, 예치금 회수 3,184억 1천 1백만원, 이자수입 23억 5천 6백만원 등 5,788억 6천 7백만원이고, 지출계획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(비용자성사업비) 2,317억 2백만원, 예치금 3,471억 6천 5백만원 등 5,788억 6천 7백만원입니다.

[표-1] 기금수지 총괄

(단위: 천원)

| 수입 계획 | | | | 지출 계획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수입 항목 | '22년 수입액 (A) | '21년 수입액 (B) | 증 감 (C=A-B) | 지출항목 | '22년 지출액 (A) | '21년 지출액 (B) | 증 감 (C=A-B) |
| 합 계 | 578,867,241 | 318,411,000 | 260,456,241 | 합 계 | 578,867,241 | 318,411,000 | 260,456,241 |
| 교특회계 전입금 | 258,100,000 | 318,411,000 | -60,311,000 |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(비용자성사업비)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예치금 회수 | 318,411,000 | - | 318,411,000 | 기본경비 | - | - | - |
| 이자수입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 예비비및기타(예치금)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
나. 수입계획

-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,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,581억원입니다.
- 한편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교육비특별

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예산상의 전출금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[표-2] 202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| 장 | 관 | 항 | 목 | '22년 수입액 (A) | '21년 수입액 (B) | 증 감 (C=A-B)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[50000]내부거래 | | | | 258,100,000 | 318,411,000 | -60,311,000 |
| | | [51000]전입금 | | 258,100,000 | 318,411,000 | -60,311,000 |
| | | [51100]전입금 | | 258,100,000 | 318,411,000 | -60,311,000 |
| | | | [51102]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| 258,100,000 | 318,411,000 | -60,311,000 |
| [40000]기타 | | | | 318,411,000 | - | 318,411,000 |
| | | [42000]예치금회수 | | 318,411,000 | - | 318,411,000 |
| | | [42100]예치금회수 | | 318,411,000 | - | 318,411,000 |
| | | | [42101]예치금회수 | 318,411,000 | - | 318,411,000 |
| [20000]자체수입 | | |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
| | | [24000]이자수입 |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
| | | [24100]이자수입 |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
| | | | [24101]예금이자수입 | 2,356,241 | - | 2,356,241 |
| 수입 합계 | | | | 578,867,241 | 318,411,000 | 260,456,241 |

○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이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이 필요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자체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

○ 특히 아직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추경예산의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, 원칙적으로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재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그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바,

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재원 여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

서 미리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수입계획에 미리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.

-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추경예산 상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미리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의 재원 규모가 확정된 후 계상하고,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바,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. 지출계획

- 2022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,788억 6천 7백만원으로,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,317억 2백만원과 예치금 3,471억 6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.

[표-3] 202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| 분야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세부항목 | '22년 지출액 (A) | '21년 지출액 (B) | 증감 (C=A-B)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[050]교육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[051]유아및초중등교육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[06]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[03]교육환경개선시설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[01]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시설비 | | | | | | 231,702,000 | - | 231,702,000 |
| [160]예비비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[161]예비비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[01]예비비 및 기타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[01]예비비 및 기타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[03]내부유보금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예치금 | | | | | | 347,165,241 | 318,411,000 | 28,754,241 |
| 지출 합계 | | | | | | 578,867,241 | 318,411,000 | 260,456,241 |

○ 이 중 냉난방개선 사업은 공립학교 258건, 사립학교 98건 등 356건에 799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, 석면해소 사업은 공립학교 148건, 사립학교 36건 등 184건에 1,517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에 총 2,317억 2백만원이 지출계획에 계상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지출계획은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4조³⁾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[표-4]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 세부 내역

| 연 번 | 구 분 | 냉난방(A) | | 석면(B) | | 합 계(A+B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1 | 동부 | 15 | 5,096,051 | 9 | 6,277,175 | 24 | 11,373,226 |
| 2 | 서부 | 15 | 3,001,668 | 15 | 4,573,126 | 30 | 7,574,794 |
| 3 | 남부 | 29 | 6,962,146 | 18 | 7,816,132 | 47 | 14,778,278 |
| 4 | 북부 | 28 | 8,307,859 | 18 | 8,861,224 | 46 | 17,169,083 |
| 5 | 중부 | 17 | 3,069,944 | 9 | 2,904,788 | 26 | 5,974,732 |
| 6 | 강동송파 | 33 | 8,340,790 | 19 | 7,905,158 | 52 | 16,245,948 |
| 7 | 강서양천 | 23 | 4,082,654 | 17 | 6,031,695 | 40 | 10,114,349 |
| 8 | 강남서초 | 18 | 4,947,996 | 11 | 3,293,267 | 29 | 8,241,263 |
| 9 | 동작관악 | 33 | 5,435,822 | 14 | 7,211,795 | 47 | 12,647,617 |
| 10 | 성동광진 | 19 | 4,710,315 | 8 | 3,075,067 | 27 | 7,785,382 |
| 11 | 성북강북 | 28 | 4,985,783 | 9 | 3,982,269 | 37 | 8,968,052 |
| 소계 (공립, C) | | 258 | 58,941,028 | 147 | 61,931,696 | 405 | 120,872,724 |
| | | - | - | 1 | 41,366,397 | 1 | 41,366,397 |
| 시설사업관리 본부 (사립, D) | | 98 | 20,967,458 | 35 | 14,495,421 | 133 | 35,462,879 |
| | | - | - | 1 | 34,000,000 | 1 | 34,000,000 |
| 합계 (C+D) | | 356 | 79,908,486 | 184 | 151,793,514 | 540 | 231,702,000 |

3)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
3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
- 다만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통합공사⁴⁾로 진행될 계획인바 냉난방 개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간접공사인 석면, 바닥, 내진공사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
이와 같이 통합공사는 개별공사로 진행하는 것 보다 장시간의 설계, 공사입찰, 계약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바,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라. 끝으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⁵⁾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,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 관리,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운용계획안에는 이러한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바, 교육부의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동 기금 지출계획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) 매년 보수공사로 인한 학교 민원 증가, 학교 공사 빈도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함.
[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]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 기대효과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방법 | 단위사업별 개별공사 | 학교단위 통합공사 | 학교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성·효율성 증대 |
| 실태조사 | 매년 | 3년마다 | |

5)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이상으로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